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52
----------	-------

발의연월일 : 2026. 6. 19.

발 의 자 : 노종면 · 박용갑 · 이훈기  
허성무 · 최민희 · 정일영  
맹성규 · 김남근 · 김주영  
허종식 · 박선원 · 윤종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특정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살인, 강간, 추행, 부패범죄 등 특정범죄의 형사절차에서 범죄의 신고, 단서, 진술, 증언 등을 제공하는 신고자의 협조는 매우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범죄신고자에게 이러한 보호제도를 안내할 의무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신고자가 보호제도를 알 수 없어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신고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안내방안 마련을 의무화하여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보호·지원 안내)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불이익 처우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보좌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신청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14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주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4조의2(보호·지원 안내) ①</u>  <u>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u>  <u>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u>  <u>행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제5조에 따른 불이익 처우의</u> <u>금지에 관한 사항</u></li> <li><u>2. 제6조에 따른 보좌인 지정</u> <u>신청에 관한 사항</u></li> <li><u>3. 제7조에 따른 인적사항의 기</u> <u>재 생략 신청에 관한 사항</u></li> <li><u>4. 제9조에 따른 신원관리카드</u> <u>의 열람에 관한 사항</u></li> <li><u>5. 제13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u> <u>신청에 관한 사항</u></li> <li><u>6. 제14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u> <u>신청에 관한 사항</u></li> </ol> <p><u>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주체,</u>  <u>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u>  <u>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